◉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6-178호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선박을 임대하는 경우 선박임차인)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장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

1. 과태료 대상자

소유자명(선박임차인)	법인번호	주 소
에스티오차터링***(주)	1801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 ***호(우동, 센텀티**)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을 법에 맞게 보고하지 않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총 부과금액 632,400원**

선 박 명	기본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1.2%×2개월)	합계	산정근거
에스티오 아젤리아	300,000원	9,000원	7,200원	316,200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등)
에스티오 로벨리아	300,000원	9,000원	7,200원	316,200원	

4.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최대 60개월)하며,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5. 안내사항

- 부과된 과태료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선원해사안전팀(064-720-2639)**에서 독촉장을 발급 받아 **2026. 11. 30.(월)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과태료 부과 기관(064-720-2639)으로 문의 바랍니다.